

# 제6회 세계농아인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 선발 기준

## □ 선발 기준

구 분	자 격	근 거
선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 (2022년~2023년 기준)	내부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및 데플림픽(세계대회 등) 대회 입상 자	
지도자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제19조 (대한장애인체육회)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 (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국가대표선발규정」 제6조 1항 1호~2호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6조 1항 1호~2호에 따른 지도자 불가할 경우 참가 선수 인솔 지도자 가능함. 다만 “훈련보조” 명시로 함	

### ○ 지도자 선발

- 각 참가 선수 소속된 지도자 참가인원 제한 없음  
(미 참가 선수 소속되지 않은 지도자 미 선발)

### ○ 선수 선발

- 수영 세부종목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하거나 이하일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해 참가 대상자 선발(기록순 우선)



**(사)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Korea Deaf Sports Federation